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25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공익법인등 출연 시 상속세 세액공제(강명구의원안)	2

I. 개요

1.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25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8.

(3) 회 부 일 : 2025.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익법인등 출연 시 상속세 세액공제(강명구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익법인등 출연 시 상속세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30조의2) ○ 요건: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에 출연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금액: 상속세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강명구의원안 2025. 2. 18. 발의(의안번호 8253)

☐ 개정안은 법 제16조¹⁾ 또는 제17조²⁾에 따라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제외)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상속세 산출세액이 높은 부유층에 큰 기부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부유층으로부터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있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거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0억원의 상속재산 중 10억원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를 가정하면 과세가액은 90억원이 되고 일괄공제만 적용 시 산출세액³⁾은 37억 9천만원이 되는데, 개정안은 산출세액의 10%인 3억 7,900만원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게 됨.

둘째, 빈곤·불평등 등 사회적문제의 해결과 교육·의료 등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을 원활히 되도록 세액을 감면하는 것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조정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공익법인등에의 기부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법인등 외의 곳에 기부한 경우와 조세형평에 맞지 않게 됨.

현행법⁴⁾상 국가, 지자체,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재금구호품 및 치료비 등에 기부(유증)한 경우에 대하여 상

3) 과세표준: 85억원=90억원(상속세과세가액)-5억원(일괄공제),
산출세액: 37.9억원=85억원(과세표준)×50%(세율)-4.6억(누진공제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세액공제 혜택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공익법인등에의 기부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기부의 경우 각각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의 경우에만 과세가액 불산입에 더하여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